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특허청 고시 제2016-8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17년도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1.

특허청장

I. 목 적

- 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및 평가모델 보유 등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평가서비스 제공 및 기술평가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코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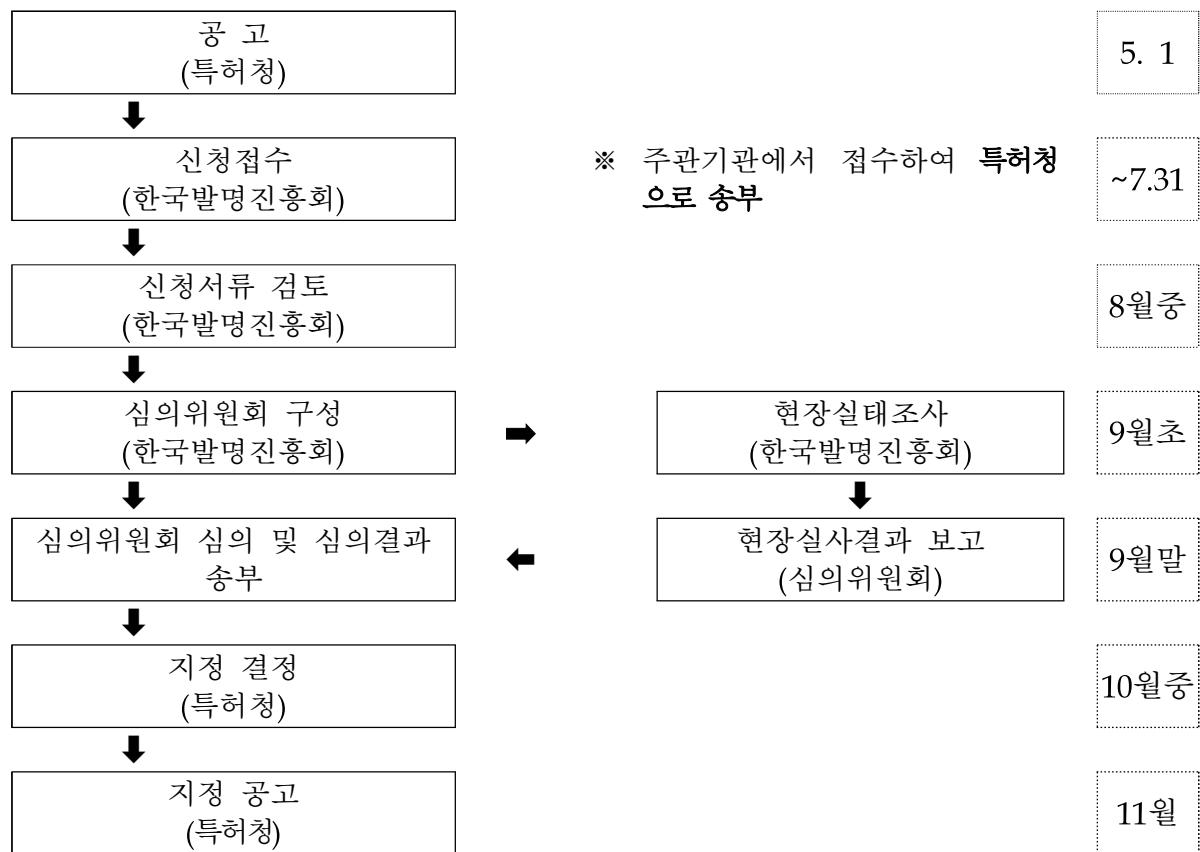
II. 지정 기준(법 제28조, 영 제12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 가.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평가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전문가
 - 나. 기술평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7명 이상의 전문가

※ 가 · 나 목의 전문가를 모두 포함한 10명 이상
 2. 발명의 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관리조직 보유
 3. 발명의 평가 관련 평가기법 보유(자체 평가모델 보유)
 4. 발명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 구축
 5. 시험·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인 경우 적절한 시험장비 보유
 6.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및 평가 수행 방법 등 평가 수행 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매뉴얼 등 그 밖의 평가수행 관련 인프라 보유

III. 지정 방법

- 지정 절차(법 제28조, 영 제12조, 요령 제 70~74조)



-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주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 한국발명진흥회는 3~5명 내외로 평가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로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지정심의위원회에 보고
- 지정심의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지정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심의 의견을 송부
※ 필요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청취
-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특허청장에 보고
- 특허청은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공고

IV.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 72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발명의 평가사업 활성화 계획, 업무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 그 밖에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 개인정보보호법('11.9.30 시행)에 따라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함

접수기간 : 2017년 5월 1일 ~ 2017년 7월 31일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042-481-5807)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02-3459-2932)

V. 기타

지정의 취소(법 제31조, 영 제14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평가기관으로서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